

- 2026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선발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공식 SNS 운영·홍보 (공보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공식 SNS 기획 및 운영 ▪ SNS 콘텐츠(이미지·영상) 제작유통 ▪ AI기술을 활용한 시정홍보 기획 제작 ▪ 재난·방역·축제·행사 등 실시간 안내지원 ▪ 주요 시정소식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 SNS 시정참여 이벤트 기획운영 ▪ 신규 SNS채널 발굴운영
산학협력분야 (청년정책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신규사업 발굴추진 및 추가 이관사업 운영관리 ▪ 대학 RISE 사업성과평가(자체·중간·종합평가) 및 환류 지원 ▪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 법정계획 수립 지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시행계획,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시행계획) ▪ 산학연 협력 관련 현안업무(중앙부처·대학 각종 행사 참여/지원) 등
옥외광고물분야 (건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 불법 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정비 ▪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1톤 트럭) 운행 ▪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점검 ▪ 옥외광고물 허가, 민원처리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역원 관리
남부통합 보건지소장 (보건소*)	보건 5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통합보건지소 총괄·운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소 내 인력 관리 및 보건행정업무 추진 등

※ 임용기간은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동)

2.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 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3) 연 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에 따라 응시연령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링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중(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자격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공식 SNS 운영·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SNS 홍보기획 및 채널운영, AI 기반 콘텐츠(이미지·영상) 제작 분야 근무경력

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산학협력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 산학협력 또는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옥외광고물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옥외 광고물 설치 등의 위반단속 관련 근무경력
남부통합 보건지소장 (일반임기제 보건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 분야 근무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6년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기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전임근무(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 수

- (기본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범위에서 협의 결정함

개방형이 아닌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5급(상당)		69,663천원	주 40시간 기준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주 40시간 기준
8급(상당)	62,096천원	44,296천원	주 40시간 기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1) 교부처: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2) 접수기간: 2026. 4. 6.(월)~4. 8.(수) / 3일간
- 3) 접 수 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팀(5층 511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5급: 10,000원,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 서식을 사용

○ 등기우편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팀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해당 수입증지(정부 수입인지 아님)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 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겹면에 **“2026년 제3회 암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044-300-3044)로 고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5)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일 자	장 소	
'26.4.21.(화) 전후	'26.4.29.~5.1. 전후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 ※ 사정에 따라 밀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타 관련분야 제출자료(우대요건, 자격증, 연구실적) 등
-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2)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3)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

※ 5급 10,000원, 다급: 7,000원, 라급 5,000원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는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우체국 판매)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학위 등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최종합격 시에는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해당 대사관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전임근무(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 이외의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4-300-3044)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www.total.kcomwel.or.kr)에서 출력 가능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가. 필수 자격증(해당분야에 한해 제출)

타.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A4용지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 제9호)

※ 모든 증명서류(최근 3년 이내 경력)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 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 시청 누리집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 고
시험절차 등		운영지원과	044-300-3044	
임용분야 직무내용	공식 SNS 운영·홍보	공보관	044-300-2632	
	산학협력분야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23	
	옥외광고물분야	건축과	044-300-5443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044-301-2012	

-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별지서식(제1~9호) 각 1부.